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채 우 진 의원)

의안 번호	23-37
----------	-------

발의년월일 : 2023. 3. .

발의자 : 채우진,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1. 개정이유

최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동법 시행령의 관리대상이 아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옥외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민의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대상 옥외행사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구민이 소유하는 시설, 건물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

다. 안전관리계획 대상 옥외행사의 주요내용 구체적 명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3. 3. 22. ~ 3.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이상 3,000명 미만**”을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정 인원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로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u>이상 3,000명 미만</u>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u><신 설></u></p>	<p>제3조(적용 범위) ----- ----- ----- ----- ----- <u>이상</u> ----- ----- ----- ----- ----- ----- ----- -----</p> <p><u>제4조의2(구민의 책무)</u>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p>
<p>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옥외행사의 개요</u></p>	<p>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u></p>

<p>2. ~ 7. (생략)</p> <p>③ (생략)</p>	<p><u>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 예정 인원 등)</u></p> <p>2. ~ 7.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제6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1은 제66조의13으로 이동 <개정 2017. 1. 1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본조신설 2014. 2.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없음
- 나. 관련조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2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김경수
연 락 처	02-3153-9463